

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는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제31조의2 신설)

사업주의 사망·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화물운송차주 등을 포함시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자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3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가.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퀵서비스업자

제36조제3호 중 “것이 의학적으로”를 “상당인과관계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재요양으로”를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으로, “있다고 인정될”을 “있을”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등급등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등급등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2. 장애상태가 호전된 경우: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등급등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제10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5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근로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를 “이 영 제125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50명”을 각각 “300명”으로 한다.

제1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리운전업자”를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제1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을 받고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또는 약제비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6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함.

##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 마. 중·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월 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대통령령 제303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자녀와”를 “유자녀 및”으로 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장학금”을 각각 “학업장려금”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장학금”을 “학업장려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지원구분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지원구분란 중 “장학금”을 각각 “학업장려금”으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